#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의안번호 | 83 |
|---|---|

2022. 9. 2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Ⅰ.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8월 29일, 이종환 의원(찬성자 9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2.9.21.)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 Ⅱ. 제안설명의 요지(이종환 의원)

### 1. 제안이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 및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신규 등록 박물관 증가에 따라 현행 제1조에 나열된 박물관 명칭을 삭제하고 신규 개관 박물관을 포함하여 별표에 명시함(안 제1조 및 별표 신설).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관일 확대함(안 제2조제2호).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를 관람료 면제대상자에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라. 운영위원회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 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마.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와 관한 규정을 추가함(안 제14조) .

바. 대관허가 신청은 온라인 예약시스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보완수 단으로 우편, 방문 등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대관허가 심사 시 회의록 작성 및 심사결과 공개 규정을 추가함(안 제19조제3항 신설).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박물관 목록을 별표로 관리하여 조례에 적용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개관일을 확대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발의되었음.

○ 또한 보훈 관련 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휴관제외일 확대, 관람료 면제자 확대 등 현행 제도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임.

**나. 박물관 목록 별도 작성(안 제1조, 안 별표)**

○ 개정안은 총 6개소인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명칭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별표>를 신설하여 목록으로 작성·관리하려는 것임.

**< 박물관 명칭과 위치 신설 >**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신 설></td><td><별표><br>서울특별시립박물관 명칭 및 위치(제1조 관련)<br><table><tr><th>명 칭</th><th>위 치</th></tr><tr><td>서울역사박물관</td><td>종로구 새문안로 55 (신문로2가 2-1)</td></tr><tr><td>청계천박물관</td><td>성동구 청계천로 530 (마장동 527-4)</td></tr><tr><td>서울생활사박물관</td><td>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공릉동 622)</td></tr><tr><td>한성백제박물관</td><td>송파구 위례성대로 71 (방이동 88-20)</td></tr><tr><td>서울우리소리박물관</td><td>종로구 율곡로 96 (와룡동 5-9)</td></tr><tr><td>서울공예박물관</td><td>종로구 율곡로3길 4 (안국동 175-112)</td></tr></table></td></tr>
</table>

○ 현행 조례는 제1조(목적)에서 적용 대상을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등 현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립박물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관리·운영 중인 박물관은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등 총 6개임[1].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박물관

○ 또한 조례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표로써 박물관의 목록을 작성·관리하는 것은 시민에게 혼란을 줄이면서, 입법기술상으로도 합리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안 제1조와 안 별표에 따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 휴관 제외일 확대(안 제2조제2호)

○ 개정안은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일 경우까지 휴관하지 않도록 휴관제외일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개관 및 휴관)**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br>1. 1월 1일<br>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 **제2조(개관 및 휴관)** ----------<br>----------<br>----------.<br>1. (현행과 같음)<br>2. ----------<br>----------<br>공휴일 또는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일 ---------- |

- 서울시에 등록된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26개로 개별 조례 또는 자체 방침으로써 휴관일을 정하고 있으며, 현행 서울시 조례에는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하되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휴관을 하지 않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휴관 제외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대체공휴일을 포함할 경우 개관일수는 최대 7일

까지 증가하게 됨(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추석연휴, 어린이날에 따른 대체공휴일).

○ 박물관의 개관일수가 늘어나는 것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라. 관람료 면제대상자 추가(안 제5조)

○ 개정안은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박물관 관람료 면제대상자를 추가하는 것임.

< 보훈 관계 법령 등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현황 >

<table>
<tr><th colspan="2">법령</th><th>대상자</th><th>대상 시설 및 감면 정도</th></tr>
<tr><td rowspan="7">보훈 관계 법령</td><td>국가유공자법</td><td>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td><td rowspan="12">◦ 이용료 면제<br>- 고궁 및 능원<br>- 국공립 공원<br>- 독립기념관<br>- 전쟁기념관**<br>-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br>- 국공립 수목원<br>- 국공립 자연휴양림<br><br>◦ 이용료 50% 이상 감경<br>-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br>- 국공립 공공체육시설<br><br>*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br>** 의사상자법의 경우 대관공연·대관전시 제외</td></tr>
<tr><td>독립유공자법</td><td>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td></tr>
<tr><td>참전유공자법</td><td>유공자 본인</td></tr>
<tr><td>고엽제법</td><td>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td></tr>
<tr><td>5·18유공자법</td><td>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해등급 1~3급인 경우)</td></tr>
<tr><td>특수임무유공자법</td><td>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td></tr>
<tr><td rowspan="2">기타 법령</td><td>의사상자법</td><td>의상자 본인,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td></tr>
<tr><td>국군포로송환법</td><td>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td></tr>
</table>

○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상 법령에 따른 관람료 면제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복지법」(제2호부터 제5호까지) 등 4개 법령에 따른 무료관람 대상자만을 나열하고 있으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5개 법령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미술관에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알림에 따른 정비대상 통보 및 입법추진 요청’(법무담당관-3019, 2021.2.23.) 공문을 통해 누락된 법령상 관람료 면제대상을 보완하도록 요청한 바 있음.

○ 따라서 국공립 시설의 이용료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5개 법령을 조례에 추가하여 박물관 관람료 면제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의 일관성·정합성 유지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마. 대관의 투명성 제고(안 제11조, 안 제14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 개정안은 박물관 대관시설의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5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대관 신청 절차와 심사결과 공개 등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제2020-419호, 2020.9.7.)는 대관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50% 이상으로 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음.

○ 또한 권익위는 의결서에서 대관신청 시 특별한 이유 없이 방문접수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접촉에 의한 부정부패 발생 요인이 되며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하였고, 최종 심사결과 미공개, 회의록 생산 규정 부재 등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 이처럼 박물관 운영위원회 외부위원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명시하고, 제척·기피·회피, 온라인 접수, 심사결과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은 위원회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8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 Ⅵ.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환 의원 발의)**

| 의안 번호 | 83 |
|---|---|

발 의 년 월 일 : 2022년 08월 29일
발 의 자 : 이종환 의원(1명)
찬 성 자 : 곽향기, 김영철, 김원중, 김태수, 김형재, 봉양순, 이영실, 최민규, 홍국표 의원(9명)

## 1. 제안이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 및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신규 등록 박물관 증가에 따라 현행 제1조에 나열된 박물관 명칭을 삭제하고 신규 개관 박물관을 포함하여 별표에 명시함(안 제1조 및 별표 신설).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관일 확대함(안 제2조제2호).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를 관람료 면제대상자에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라. 운영위원회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 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마.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와 관한 규정을 추가함(안 제14조).

바. 대관허가 신청은 온라인 예약시스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보완수단으로 우편, 방문 등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대관허가 심사 시 회의록 작성 및 심사결과 공개 규정을 추가함(안 제19조제3항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등 현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을 “서울특별시립박물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에 따라 적용되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은 별표와 같다.

제2조제2호 중 “공휴일일”을 “공휴일 또는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성하되”를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로 한다.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⑦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 중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온라인 예약시스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보완수단으로 우편, 방문 등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 심사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명칭 및 위치(제1조 관련)

| 명 칭 | 위 치 |
|---|---|
| 서울역사박물관 | 종로구 새문안로 55 (신문로2가 2-1) |
| 청계천박물관 | 성동구 청계천로 530 (마장동 527-4) |
| 서울생활사박물관 |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공릉동 622) |
| 한성백제박물관 |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방이동 88-20) |
| 서울우리소리박물관 | 종로구 율곡로 96 (와룡동 5-9) |
| 서울공예박물관 | 종로구 율곡로3길 4 (안국동 175-112)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등 현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단 신설> |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립박물관----------<br>----------<br>----------<br>----------<br>----------<br>----------<br>-------. 이 조례에 따라 적용되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은 별표와 같다. |
| 제2조(개관 및 휴관)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br>1. (생 략)<br>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br>3. (생 략) | 제2조(개관 및 휴관) ----------<br>----------<br>----------<br>----------<br>----------.<br>1. (현행과 같음)<br>2. ----------<br>---------- 공휴일 또는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일 ----------<br>3. (현행과 같음) |
| 제5조(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 제5조(관람료의 면제) ① ------ |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br>----------<br>----------<br>--------.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신 설> |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 <신 설> |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신 설> | 8.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신 설> |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 <신 설> |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 6. ~ 12. (생 략) | 11. ~ 17. (현행 제6호부터 제1 |

| | |
|---|---|
| ②·③ (생 략) | 2호까지와 같음)<br>②·③ (현행과 같음) |
|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 ③ (생략) |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br>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br>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

| | |
|---|---|
| | 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 <신 설> | 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신 설> |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 <신 설> | ⑦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 |

| | |
|---|---|
| | 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
| 제18조(대관허가 신청) 대관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대관허가 신청) -------- ---------- ---------- ---------- ---------- 온라인 예약시스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보완수단으로 우편, 방문 등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제19조(대관허가 심사) ①·② (생 략) | 제19조(대관허가 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③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 심사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 <신 설> | <별표><br>서울특별시립박물관 명칭 및 위치(제1조 관련) |

| 명 칭 | 위 치 |
|---|---|
| 서울역사박물관 | 종로구 새문안로 55 (신문로2가 2-1) |
| 청계천박물관 | 성동구 청계천로 530 (마장동 527-4) |
| 서울생활사박물관 |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공릉동 622) |
| 한성백제박물관 |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방이동 88-20) |
| 서울우리소리박물관 | 종로구 율곡로 96 (와룡동 5-9) |
| 서울공예박물관 | 종로구 율곡로3길 4 (안국동 175-112) |